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29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김승원 · 이정문 · 김남근
민병덕 · 박선원 · 장경태
김종민 · 강준현 · 김용만
이주희 · 최혁진 · 복기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조,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 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u>100분의 6</u>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 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 우등”이라 한다)에는 <u>20억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 ----- ----- ----- ----- ----- <u>100분의 20</u> - ----- ----- ----- ----- ----- ----- ----- ----- ----- <u>100억원</u> - -----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 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에 <u>100분의 2</u> <u>0</u>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제43조(과징금) ----- ----- ----- ----- <u>100분의 3</u> <u>0</u> ----- -----

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u>40억원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u>100억원</u> ----- ----- ----- .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u>100분의 4</u>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u>10억원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 ----- ----- ----- ----- ----- <u>100분의 10</u> ----- ----- ----- ----- -----<u>50억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